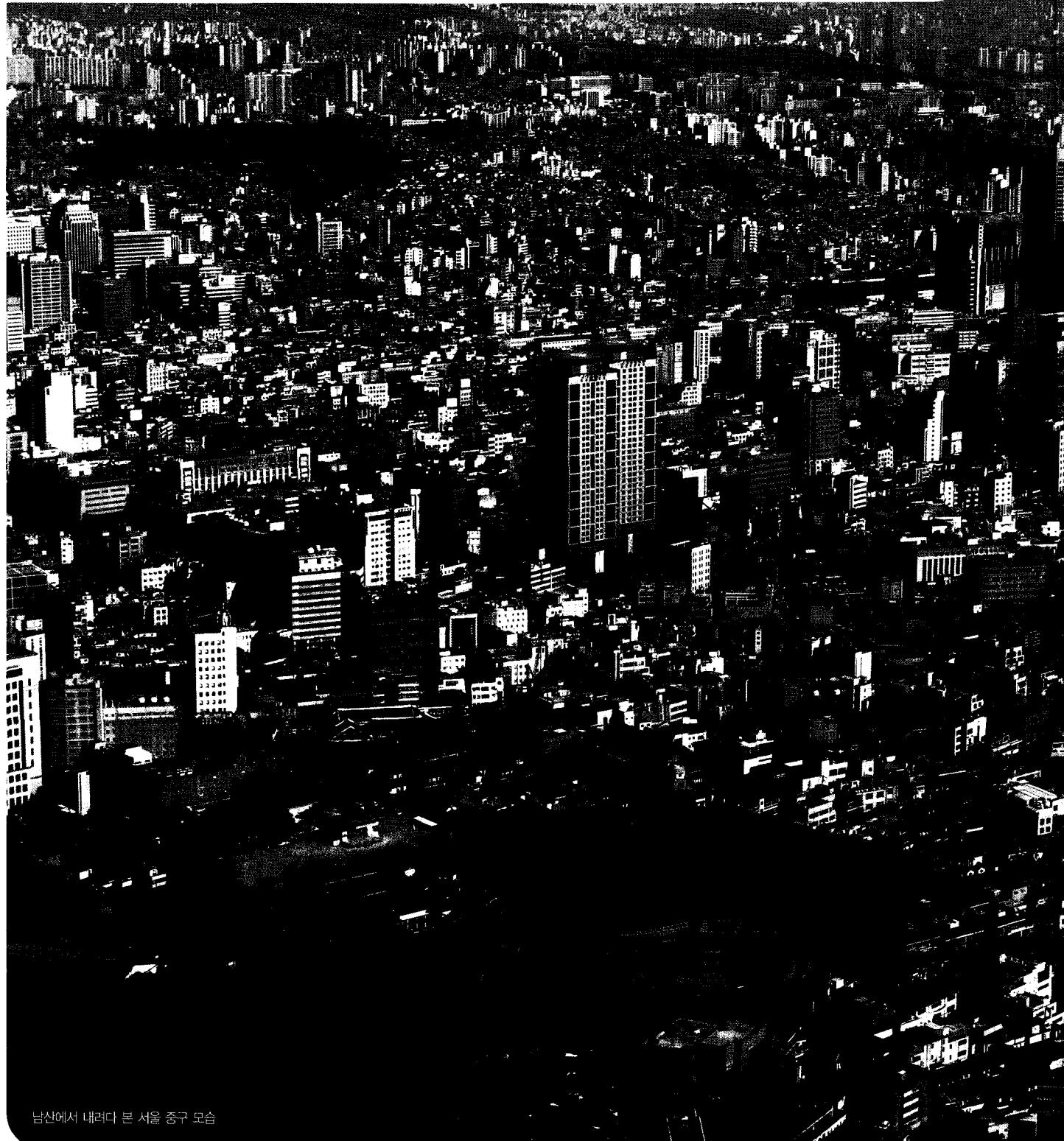


시울시가 추진하는 산업뉴타운 중구 지역엔 “인쇄” 마땅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중구 모습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1월 26일 서울인쇄센터 앞에서 인쇄마을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조정석 이사장과 김정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조합 임직원들은 이날 중구 쌍림동부터 인쇄사가 밀집해 있는 방산시장을 비롯하여 필동, 을지로, 충무로 등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울시가 중구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쇄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화산업인 인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인쇄산업을 아예 제외하고 금융산업을 지정한 것은 인쇄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인쇄인들은 인쇄업의 미래를 위해 서명운동을 적극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구 인쇄타운 발전과정

중구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풋풋한 종이 내음과 후각을 자극하는 잉크,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한데 어울려 생동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곳에는 인쇄 및 관련업체가 3천여 개에 이르며, 여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만도 2만여명을 헤아린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인쇄물은 안내 스티커에서부터 명함, 청첩장, 카드, 팜플렛, 학위논문, 캘린더 등 다양하다. 이 지역에 인쇄촌이 형성된 것은 1403년의 왕립 활자주조 기관이었던 주자소 설치로부터 시작된다.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살아 숨 쉬는 인쇄타운

1970년대까지 ‘인쇄타운’으로 자부한 곳은 중구 을지로 장교동 일대였다. 6·25전쟁 뒤 한지상들이 많이 있던 장교동 일대에 인쇄업체들이 자연스레 몰려들면서 인쇄타운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을지로 인쇄타운이 성황을 이루자 이웃한 충무로의 인쇄타운도 제법 규모를 갖춰갔다. 1960년대 말부터 주변에 세운상가, 진양상가, 풍전상가가 들어선 것도 계기가 됐다.

1984년은 대전환점이었다. 을지로 장교동 일대가 재개발로 혈리면서 500여 곳의 인쇄업체가 충무로로 자리를 옮겼다.

다섯 명도 안 되는 직원에, 30평방미터 미만의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터라 영세 업자들은 충무로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충무로 인쇄타운에도 이전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지금의 충무로 인쇄타운이 태어났다. 이때부터 ‘인쇄타운’은 충무로를 의미하는 말이 됐다.

인쇄 타운 안에도 모습은 다르지만 삶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곁으로 보기에는 낡은 건물이 라도 공장 안에는 최첨단 기계들이 쉼 없이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빠 일을 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최신형 기계들은 끊임없이 인쇄물을 토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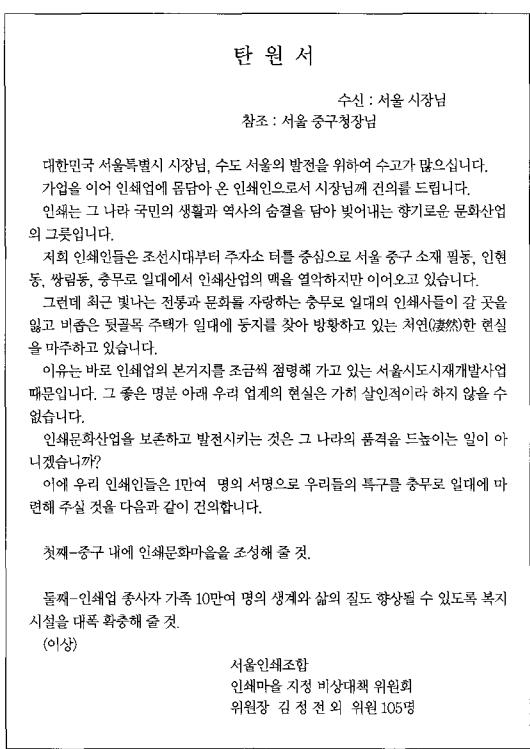
도심산업인 인쇄업 총체적 위기

인쇄산업은 도심형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산업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쇄의 메카인 중구지역, 필동 인현동 쌍림동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인쇄와 매우 밀접한 산업인 지업사, 제책업계, 기획사, 운송업체 등 다채로운 분야의 복합 산업이 함께 공조하며 중구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구지역 일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심형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쇄관련 산업은 제외되어 인쇄인들은 평생사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일해 왔던 인쇄인들에게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업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공장자리를 구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인쇄라는 것이 도심산업이라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가 아니고서는 외곽으로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중소인쇄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 마련, 이것은 정부와 인쇄인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인식과 체질변화 시급

인쇄업체 관계자들은 인쇄업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식변화’와 ‘체질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쇄업체를 도시에서 이전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장이 있으면 환경이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인쇄업은 근본적으로 타제조업체와 다른 점이 많다. 인쇄업 자체가 문화산업이고, IT산업이기 때문에 도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또한 홍보해서 인식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 인쇄업체는 ‘체질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 가격경쟁, 서비스 차별화 등이 업계의 화두였지만, 이제는 주변과 어울리는 환경 대한 투자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산업뉴타운 6곳 지정

서울시는 2012년까지 성수를 정보기술, 마포를 디자인, 종로를 귀금속, 여의도를 금융, 중구를 금융, 양재를 연구·개발 산업뉴타운으로 각각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산업뉴타운’은 국토계획법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키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는 ‘금융’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맞춘 서울시의 ‘도심재창조 프

로젝트'는 인쇄업체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 촉진계획과 연계해 중구 필동2·3가와 필동길 주변을 ▲산책 및 휴식을 위한 가로공원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단위 공동재건축 방식을 통해서 구역별로 목표에 맞춰 시행할 전망이다. 그리고 특화한 상가거리를 넓혀주고, 건축 규제와 주차장 규제를 풀어 영업기반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구는 산업뉴타운을 추진하더라도 시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역 산업특성에 맞는 지구가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업체여서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망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영세산업의 도산도 우려된다. 산업뉴타운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산업뉴타운이 영세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구청의 경우 금융지구로 지정됐는데 인쇄업도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공해 발생 우려로 심사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구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인쇄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충무로 인쇄골목

각 지역 인쇄산업단지 추진현황

▶▶ 대구

대구시는 지역의 인쇄·출판산업을 문화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컨버전스 등 새로운 시장 흐름을 반영한 대규모 출판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대구 달서구 월성·장기동 등 남대구IC 일대 24만6259m²으로, 지난 1월 11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 대구 출판 산업단지 조감도

오는 2012년까지 조성되는 인쇄업과 출판업, 영상·정보서비스업, 서적도매업 등을 중심 유치해 산업과 기술·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단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출판단지 조성은 지역 출판산업이 인쇄물 제작가공에 치우쳐 구조가 취약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장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따른 것. 지난 2007년 기준 대구 출판산업의 규모

는 업체수 1622개(종사자 6373명), 연 매출액 4669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출판단지 를 통해 지역 인쇄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출판 콘텐츠 생산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대구의 관문인 남대구IC 일대의 경관 및 기능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 인쇄업체들의 숙원이었던 ‘대전·충남인쇄출판산업단지(이하 인쇄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도 대전지역 인쇄산업을 집적화·첨단화할 수 있는 인쇄산단 조성에 공감하고, 부지를 물색하는 등 추진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역 인쇄산단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전은 인쇄인프라가 집적돼 서울, 대구와 함께 전국 인쇄산업 3대도시로 손꼽혀 왔지만 최근 원도심 공동화와 인쇄환경 낙후화로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인쇄·출판업체는 동구 정동·중동·삼성동 일대 750여 곳을 비롯, 2000여 곳이 몰려있지만 열악한 주변환경과 설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전역 역 세권 재정비사업까지 겹치면서 대전 인쇄거리 업체들은 이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추진위는 현재 200여개 관련 업체가 분양 입주를 희망했으며 인쇄산단 조성이 확정되면 외부업체 등 300곳 이상의 인쇄·출판 관련 업종이 몰려 대전이 인쇄산업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로 인쇄단지 추진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광주시는 인쇄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인쇄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인쇄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역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만기직전 이탈 외국인산업연수생 시중발급 허용, 공제기금 금융기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인쇄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광주시의 명확한 마스터플랜 제시와 함께 인쇄문화산업단

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도심공동화로 인한 인쇄업체들과 공예업체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쇄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파주

경기도 파주 지역은 소규모 단위의 인쇄단지 조성이 여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있는 인쇄사들이 이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그러나 파주시와의 협의와 부지매입 문제 등으로 단지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파주인쇄단지인 ‘프린팅파크’



〈인쇄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원용 조항들〉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 2009. 9. 6.] [법률 제9472호, 2009. 3.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당연하게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예컨대 무조건적인 시외 이전보다는 인쇄업체의 친환경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인쇄마을 같은 협동
단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5조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쇄시설의 현대화 및 인쇄 협동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 인쇄업에 대한
지원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제10조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 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직접 거론되고 있는 조항으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
아서 적극 활용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제30조 2항〉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
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문화부와의 협조를 통해 서울시를 설득하고 지원을 받아내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
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
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무로 일원의 인쇄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쇄업체들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전망이
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2호]

제3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로그램 및 전자칠판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설비투자 및 유통 관련 시설과 기반 시설 등 인쇄마을의 조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적극적인
인용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